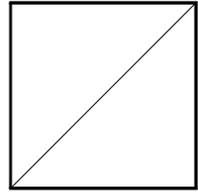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3 호	보 고 사 항
보 고 연 월 일	2023. 1. 26. (제 2 차)	

증권선물위원장에 대한 위임업무
처리결과 보고

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김 소 영
제출 연월일	2023. 1. 26.

1. 보고주문

- 증권선물위원장에 대한 위임업무 처리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함

2. 보고이유

- 「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」 규정 개정(시행일 : 2021.7.22.) 이후에 증권선물위원장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- 증권선물위원장 위임 조치현황
 - 경고 : 8건
 - 주의 : 1건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<붙임>

- 「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」 [별표]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

(별지)

증권선물위원장에 대한 위임업무 처리결과 보고

1. 증권선물위원장 위임업무 처리 현황

- 증권선물위원장 위임업무 처리 건수 : 총 9건
 - 경고 : 8건
 - 주의 : 1건

구 분		건수
조치내용별	경 고	8건
	주 의	1건
위반내용별	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	7건
	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	2건

【증권선물위원장 위임 조치 추이】

(단위 : 건)

구 분	'21년도 하반기	'22년도
경 고	6	2
주 의	0	1
합 계(사건 수)	6(3)	3(1)

< 붙임 >

관 계 법 규

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제151조(조사 및 정정요구 등) ① (생략)

②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보고서의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때에는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426조(보고 및 조사) ① 금융위원회(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, 제176조, 제178조, 제178조의2,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,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·서류,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~④ (생략)

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·조치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⑥~⑧ (생략)

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59조(금융위원회의 조치) 법 제151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.

1.~3. (생략)

4. 경고 또는 주의

제376조(조사결과에 따른 조치) ① 법 제426조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”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.

1.~10. (생략)

11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

가. 경고

나. 주의

다.~마. (생략)

② (생략)

□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

[별표]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

위 임 사 항	관 계 법 규
<p>1.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</p> <p>마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1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 중 경고 또는 주의(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하여 조치하는 경우에 한함. 다만, 위임사무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정기보고)</p> <p>바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중 경고 또는 주의(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하여 조치하는 경우에 한함. 다만, 위임사무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정기보고)</p>	<p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9조제4호</p> <p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6조제1항제11호가목·나목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
소관부서	자본시장조사총괄과
연 락 처	02-2100-2605